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549063 판결 [가맹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나10158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19가단549063 판결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문준영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서정식, 이승련, 이해승

변론 종결 2020. 9. 17.

판결 선고 2020.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9,641,320원 및 그 중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5.부터, 28,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1,139,100원에 대하여는 2019. 2. 25.부터, 38,002,220원에 대하여는 2019. 7. 3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3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영어학원 D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C 영어학원] 가맹사업에 참여하여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고, 이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의 권리 및 의무 사항과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2018.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제40조(특약사항)

- ① 가맹유형 : S. Branch
- ② 가맹비 :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③ 교육비 :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 ④ 이행보증금 : 면제
- ⑤ 온라인사용료 6개월 지원
- ⑥ 온라인 사용자 50명 이상시 Sub-Branch로 변경하며 프로모션 총 금액의 차액인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입한다.

나. 피고의 사내이사 E는 2018. 12.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특약사항

1. 가맹유형 : S. Branch
2. 가맹비 : 500만 원
3. 교육비 : 100만 원
4. 이행보증금 : 제외
5. 온라인 사용료 6개월 지원
6. 오픈시까지 6개월 유예
7. 계약금으로 가맹비의 50%인 250만 원 납입
8. 추후 오픈하는 학원이 Sub Branch일 경우 300만 원만 추가 납입하며 교육비는 추가되지 않음
9. 계약해지시 계약금 100% 환불

다. 원고는 2019. 1. 2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영어도서관 진천직영점 직영계약(이하 '이 사건 직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권한

- 1)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상표사용의 권한 : 단, 가맹점 해당 권역에 한정
- 2) 월정 상표사용료 : 면제
- 3)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부가세 별도)
A. 50만 원 정액제 : 회원수 제한 없음
- 4) 본사 물품 구매시 원가 사용 : 가맹점 공급가의 25% 할인 적용
(단어노트, 포트폴리오 파일, 가방 등)
- 5) 본사 임원의 무상 경영컨설팅 지원 : 요청시 연 2회
(학원 운영체제 및 교육컨텐츠 점검과 컨설팅, 원생모집 마케팅 기획, 학부모 설명회 유치)
- 6) 직영점 강사 본사 객원연구원으로 선임(요청시)
강사 자부심 및 질적 향상 도모, 학부모 홍보 효과(본사 R&D 업무수행시 비용 지급)

2. 본사 업무협조 사항

- 1) 예비 가맹점 상담시 장소제공 : 월 2회 이하에 한정

2) 예비 가맹점주 가맹상담 지원 : 가맹성공시 가맹비 수익 분배(사례별 10%~40%)

3) 직영점 인근 지역 가맹점 개설시 강사교육 장소제공 : 월 1회 이하에 한정

○ 주식대금 : 15,000,000원

○ 직영점비 : 10,000,000원(vat 별도)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5. 가맹금 2,200,000원, 2019. 2. 14. 가맹금 및 교육비 3,300,000원, 직영계약금 10,000,000원, 주식대금 15,000,000원, 2019. 2. 25. 교재·북케이스 및 라벨비용 11,139,1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9. 2. 23.부터 2019. 7. 31.까지, 부동산 중개비 2,780,000원, 월세 7,480,000원, 관리비 1,642,220원,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 1,100,000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25,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3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② 피고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하여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③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시 6개월내 계약 해지권 행사 및 계약금 100% 환불을 약속하였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직영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직영계약을 체결하면서 60명 이상 학생 유치를 보장하고, 영업 지원의 약속을 부풀렸으며, 직영계약의 혜택을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직영계약을 계약불이행으로 해지 또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 또한,

피고의 위와 같은 속고기간 무시, 계약서 제공 불이행, 허위·과장의 정보 제공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으로 가맹금 및 교육비 5,500,000원, 직영계약비 및 주식대금 25,000,000원, 교재·북케이스 및 라벨비용 11,139,100원, 부동산 관련 비용 38,002,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여부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은,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체결 당시 "2018. 11. 10.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 2018. 11. 10. 피고로부터 본 가맹계약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한다."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비로소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2018. 11. 10. 제공한 것처럼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여부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가맹금 4,400,000원과 직영계약금 10,000,000원을 예치기관이 아닌 피고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해지권 유보 및 계약금 100% 환불 약정 여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을 2,500,000원으로 정한 사실, 6개월 이내 계약 해지시 계약금을 환불해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직영계약 및 주주관계의 파기를 요구한 2019. 3. 15.자 내용증명이 반송된 점, 원고가 2019. 5.경 이 사건 학원의 인테리어, 에어컨 설치 등을 진행한 점,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인 2019. 8. 23.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직영계약시 계약서 제공 여부 이 사건 직영계약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일반적으로 직영점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가리키나, 이 사건 직영계약의 경우 원고에게 '직영점'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상표사용료,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월 사용료 등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며, 원고로부터 직영점비를 지급받는 것인바, 가맹계약의 일종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영계약에 관한 가맹계약서를 사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인정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가맹희망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가맹사업법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이러한 정보 불균형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할 의무 및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아니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직영계약 14일 전은 물론이고 이 사건 직영계약 이후로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직영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계약 불이행 또는 기망, 허위·과장 정보 제공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직영계약을 체결하면서

60명 이상 학생 유치를 보장하고, 영업 지원의 약속을 부풀렸으며, 직영계약의 혜택을 과장하는 등 이 사건 직영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거나 계약 내용을 기망하였고,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손해의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영업 지원 등 혜택이 좀 더 많다고 하여 이 사건 직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직영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일반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를 검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직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직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한정된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교재·복케이스 및 라벨 비용, 부동산 관련 비용은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영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직영계약비 10,000,000원과 주식대금 15,000,000원의 합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9. 2.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한 것이고 직영계약을 위하여 반드시 주식대금을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옥희